

선거관리규정

2009년11월30일 제정
2010년 4월16일 개정
2011년12월 5일 개정
2012년12월10일 개정
2014년 4월19일 개정
2017년 4월22일 개정
2021년 4월17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9조, 제10조 및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해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출(이하 '임원선거'이라고 한다) 및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일 및 투표방식)

1. 회장은 차기 임원선거를 임기만료 14일 전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50일 이전에 선거일과 선거방식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투표방식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주관하는 모바일투표 등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 절차는 선거일이 확정된 날로부터 진행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을 포함한다.

제2장 선거권자

제3조 (임원선거 선거인단)

1. 이사회 선거인단 : 고문, 전임 부회장(전임 2기까지 해당), 연회비 및 해당 임기의 이사회비를 완납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참여이사 제외).
2. 정회원 선거인단 : 정회원으로 학회 가입 후 3년 이상 경과되었고 연회비를 완납한 자.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회장은 차기 임원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집행,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 4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수행을 도와줄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학회 전현임 회장단 중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5인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 중 연륜과 덕망이 높은 자로 선임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를 위한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선거의 종료시점까지 지속된다.

제6조 (선거인단 명부의 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이사회 선거인단 및 정회원 선거인단의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장 피선거권과 당선자 결정

제7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의 자격)

1.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상임이사를 3회 이상 역임한 자는 회장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단, ‘역임’이라 함은 해당직의 임기 중 절반 이상을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2. 부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상임이사를 2회 이상 역임한 자는 수석부회장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단, ‘역임’이라 함은 해당직의 임기 중 절반 이상을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 (입후보 절차)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전까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임원선거 입후보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선거일 2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모든 후보자의 명세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소견발표)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선거인단에게 학회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소견발표의 분량 및 횟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투표 및 당선자 결정)

1. 투표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당선자는 득표율이 가장 높은 입후보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당선자의 결정은 이사회 선거인단 과반수의 투표와 이사회 투표자 과반수 동의와 정회원 투표자 과반수 동의로 결정한다.

제11조 (득표율 산정)

입후보자들의 득표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다(득표율 및 투표율 산정시 무효표 포함).

Xa : A후보의 이사회 선거인단 득표율 R₁ : 이사회 선거인단 투표율

Ya : A후보의 정회원 선거인단 득표율 R₂ : 정회원 선거인단 투표율

$$A \text{ 후보 득표율} = \frac{X_a * R_1 + Y_a * R_2}{R_1 + R_2}$$

<예시>

구분	이사회 선거인단		정회원 선거인단		최종 득표율
	득표율	투표율	득표율	투표율	
A후보	Xa=70%	R₁=90%	Ya=40%	R₂=80%	55.88%
B후보	Xb=30%		Yb=60%		44.12%

A 후보 득표율 = (70*90 + 40*80) / (90+80) = 55.88%

B 후보 득표율 = (30*90 + 60*80) / (90+80) = 44.12%

부 칙

1. 본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